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불공정 선고보도 관련 이의신청 청구기간 연장 등〉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177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태선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3. 20.
3. 회 부 일 : 2025. 3.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간은 14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의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고 있고, 처리기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안 제8조의6 제2항 및 제82조의4제5항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 및 정보통신망 게시물에 대한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 기간에 부합하도록
현행 “10일 또는 3일”에서 “30일”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밖의 이의신청
절차 전반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① (생략)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 ----- ----- ----- <u>---30일---</u> ----- ----- . 이 경우 전단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③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 대상이 된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③ ----- ----- ----- ----- ----- ----- -----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
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이하 이 조에서 “반론보도”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도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⑤ ~ ⑦ (생략)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
운동) ① ~ ④ (생략)

⑤ 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

----- . 이 경우 인
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정당 또는 후
보자에게 지체없이 그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30일

45일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
운동) ① ~ ④ (현행과 같음)

[illegible]

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⑥ (생략) <신설> ⑦ 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단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⑦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⑧ ----- -----기타 필요한 사항은----- ----- -.
---	--

현행법(제8조의6)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한 경우, 해당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및 인터넷언론사에 각각 이의신청 및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도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경과된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¹⁾

1) 「공직선거법」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②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이하 이 조에서 “반론보도”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도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는 현행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라 함)에게 각각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거부·정지·제한 등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후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정보가 현행법에 위반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삭제 또는 거부·정지·제한 등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해당 정보가 삭제되거나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

2) 「공직선거관리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또는 후보자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정보를 게시한 자 또는 해당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후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한 정보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같은 본안 절차에 앞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위법 또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행정기본법」³⁾은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여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그리고 행정청의 처리기간을 14일 이내로 정하여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음.

3) 「행정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의 처분(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으로 한다)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3.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5.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6.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행정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 기간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선거와 관련된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언론 감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한 상황에서 권리구제 절차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나 정보통신망 게시물에 대한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 기간에 부합하도록 현행 “10일 또는 3일”에서 “30일”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밖의 이의신청 절차 전반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행정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선거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권리구제의 실질적 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다만, 선거행정의 시의성과 신속성은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특히 중요한 요소인 만큼, 행정처분의 이의신청 절차에도 일정한 시간적 제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바, 모든 사안에 일반 행정절차와 동일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⁴⁾

4) 추가적으로 ①개정안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서 반론보도 청구기한을 현행 30일에서 45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이의신청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30일로 변경됨에 따라 비례적으로 기간을 조정한 것에 불과한 점 ②개정안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처리기간을 별도로 14일로 정한 것은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본법」의 처리기간 14일을 적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특히, 현행법상 선거기간은 대통령선거의 경우 23일, 그 밖의 대부분의 선거는 13일에 불과한바, 이처럼 제한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심사까지 완료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수 밖에 없으나, 이는 짧은 선거운동기간에 이의신청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하여 사실 및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 때문이라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270조⁵⁾는 선거행정의 시의성과 신속성을 고려하여 선거법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또한 선거범죄에 대한 법적 판단을 신속히 마무리함으로써 선거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임.

한편, 현행법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제1항에 따르면,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 등에 공표된 인신공격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해당 방송 또는 기사 게재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론보도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을 각각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 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데,

5)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법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선거법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인터넷선거
보도심의위원회”와 달리, 선거일 후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기관인데, 반론보도 청구기간은 해당 위원회가 설치된
시점부터 선거일까지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위탁선거법」에 위반되는 정보임을 이유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한 정보가 삭제된 후보자 등의 이의신청
기간을 어떻게 정할지는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짧은 선거운동기간에 이의신청권자로 하여
금 자신의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하여 사실 및 법률관계를 조
속히 확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행법이 이의신청 기간을 3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역시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6
